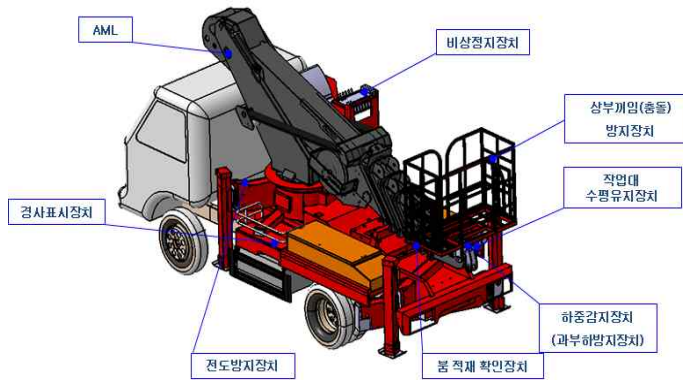


고소작업대 안전검사 前 확인 사항

안전검사 실시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하셔서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.

※ 안전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: 행정조치(고용노동부에 의한 사용중지), 재검사 실시(검사 비용 추가 납부)



- 고소작업대의 주요 안전장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
- 붐인출 와이어로프(또는 체인)의 소선 파단, 변형 및 지름감소(7%감소) 등을 점검
- 선회부 볼트의 설치상태, 손상 여부 확인
- 유압회로의 누유 등 확인
- 붐, 아웃트리거, 프레임, 실린더 등의 손상여부
- 작업범위도 부착
- 원활한 작동 상태

□ 주요 안전장치

구 분	사 진	점검 사항
작업대 안전난간		-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(높이 90cm이상)이 설치되어야 함 ※ 작업대 확장 시 전면부에 안전난간 설치 -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거나 임의로 열리지 않을 것
하중감지장치		-정격하중에 도달한 후 정격하중의 120%를 초과하기 전에 작동하여 작업대의 움직임이 정지될 것 -하중감지장치가 작동 시 가청 음향신호 및 적색 점멸등 작동 ※ 1, 2인용 이하 작업대(바스켓 형식)등 일부형식은 예외
AML (위치제어장치 또는 모멘트감지장치)		붐 각도별 허용 인출길이가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장치 - 위치제어장치는 붐 각도센서 및 길이센서로 감지 - 모멘트 감지장치는 로드 셀 등을 이용한 모멘트 값을 감지 ※ 작업반경 제한이 불필요한 장비는 예외
비상정지장치		-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될 것 -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
전도방지장치 (근접센서 또는 아웃트리거 길이 감지장치)		-근접 센서 : 아웃트리거 슬라이드 상부 또는 하부, 잭업실린더 상부에 설치된 아웃트리거가 들리게 되면 감지되고 전도에 불리한 방향으로 동작이 제한됨 -아웃트리거 인출 길이 감지장치 : 길이센서를 통해 아웃트리거 슬라이드 인출길이를 감지하여 붐의 작업반경을 추가로 제한하는 장치
경사표시장치		차대의 경사가 허용한도 내에 있는지 알려주는 장치(수준기)
작업대 수평유지장치		붐의 기복 각도에 관계없이 작업대는 항상 수평 유지